
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

2024-07-24 아마존카

- ※ 장기렌트 및 아마존카 리스 기준
- ※ 법인고객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1년 전체기간 동안 임차하면서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전체기간 동안 가입한 조건으로 계산 [전용번호판(연두색) 의무 부착차량은 전용번호판(연두색) 부착한 조건으로 계산]
-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1년 전체기간 동안 임차한 조건으로 계산 (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전체기간 동안 가입한 조건으로 계산)
- ※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연간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산입
- ※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은 별도 계산 필요

항 목	계산식	운행기록부 작성					운행기록부 미작성					비 고
		아반떼	쏘나타	그랜저	제네시스G80	제네시스G90	아반떼	쏘나타	그랜저	제네시스G80	제네시스G90	
① 월대여료(VAT포함)		403,810	517,770	654,610	972,950	1,569,590	403,810	517,770	654,610	972,950	1,569,590	48개월건적 중 몇가지 사례를 적용해 봄
② 연간 총대여료(VAT포함)	① × 12	4,845,720	6,213,240	7,855,320	11,675,400	18,835,080	4,845,720	6,213,240	7,855,320	11,675,400	18,835,080	12개월 이용 기준
③ 감가상각비 상당액	② × 70%	3,392,004	4,349,268	5,498,724	8,172,780	13,184,556	3,392,004	4,349,268	5,498,724	8,172,780	13,184,556	장기렌트 및 아마존카 리스
④ 기타비용		3,500,000	4,000,000	4,500,000	5,000,000	6,000,000	3,500,000	4,000,000	4,500,000	5,000,000	6,000,000	유류비 등 기타유지비, 감가상각비 제외
⑤ 합계(총비용)	② + ④	8,345,720	10,213,240	12,355,320	16,675,400	24,835,080	8,345,720	10,213,240	12,355,320	16,675,400	24,835,080	

업무사용비율 산정

⑥ 총 주행거리(km)	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-	-	-	-	-	
⑦ 업무사용거리(km)		20,000	20,000	20,000	23,000	20,000	-	-	-	-	-	
⑧ 업무사용비율	⑦ ÷ ⑥	80%	80%	80%	92%	80%	100%	100%	100%	90%	60%	운행기록부 미작성시=1천5백만원+⑤(최대100%)

업무사용 금액

⑨ 감가상각비상당액	③ × ⑧	2,713,603	3,479,414	4,398,979	7,518,958	10,547,645	3,392,004	4,349,268	5,498,724	7,351,650	7,963,266	
⑩ 관련비용(감가상각비 제외)	(⑤-③)×⑧	3,962,973	4,691,178	5,485,277	7,822,410	9,320,419	4,953,716	5,863,972	6,856,596	7,648,350	7,036,734	
⑪ 총 업무사용금액	⑨ + ⑩	6,676,576	8,170,592	9,884,256	15,341,368	19,868,064	8,345,720	10,213,240	12,355,320	15,000,000	15,000,000	

손금산입 합계

⑫ 총 손금산입합계	⑪	6,676,576	8,170,592	9,884,256	15,341,368	19,868,064	8,345,720	10,213,240	12,355,320	15,000,000	15,000,000	
⑬ 이월 손금산입액	⑨ - 800만원	0	0	0	0	2,547,645	0	0	0	0	0	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분
⑭ 당해연도 손금산입액	⑫ - ⑬	6,676,576	8,170,592	9,884,256	15,341,368	17,320,419	8,345,720	10,213,240	12,355,320	15,000,000	15,000,000	
⑮ 손금불산입액	⑤ - ⑫	1,669,144	2,042,648	2,471,064	1,334,032	4,967,016	0	0	0	1,675,400	9,835,080	법인의 경우 차량이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(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음)

※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가 운행기록부 미작성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으로 손금처리하는 것이 유리함

※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